



문 8. 판례에 의할 때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지만, 아직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자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.
- ②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. 따라서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,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,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-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문 9. 실체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.
- ② 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,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,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.
- ③ 경합관계에 있는 협박죄(법정형: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)와 강간죄(법정형: 3년 이상의 유기징역)의 처벌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甲은 형집행 2년 후에 A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고, 이에 따라 B죄에 대해 다시 정해진 형이 징역 3년 6월인 경우에, 甲이 집행받아야 할 형은 1년 6월이다.

문 10. 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,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서는 ‘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’에는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 의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.
- ②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형법 제90조 제1항(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·음모)의 단서에서는 ‘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’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,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.

문 11.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.
- ②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금품수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 받고 귀국한 경우, 한국법원은 甲에게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.
- ④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문 12. 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?

- ①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경우
- ② 횡령의 범죄사실을 합동절도의 범죄로 고소한 경우
- ③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
- ④ 친고죄인 강간죄를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

문 13.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.
- ②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.
- ③ 수뢰죄와 증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.
- ④ 대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뇌물성이 부정된다.

문 14. 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. -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.
-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. - 법정형을 말한다.
-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. -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.
- 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,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.

문 15.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·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, 제34조 제4항 위반행위에 있어서, 그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,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.
- ② 절도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.
-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, 이는 행위자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전 또는 사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벌의 가중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중범이 성립한다.

문 16. 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.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위조통화인 정을 모르고 절취한 경우에도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한다.
- ② 甲이 위조통화를 훔친 행위가 반드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.
- ③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하면 甲의 시계 절취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.
- ④ 乙이 위조한 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.

문 17.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.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,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.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.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확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기 때문에, 乙의 죄책은 丙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.
- ② 乙의 행위는 신탁자인 甲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경우가 되므로,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.
- ③ 甲과 乙 사이는 불법원인위탁관계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.
- ④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의 죄책으로 횡령죄의 성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문 18.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한 경우
- ② 피해자 외 2인이 깨진 병과 벽돌 등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 구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
- ③ 친구가 훔쳐온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관해 준 경우
- ④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

문 19. 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,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甲은 죄책을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야산에 매장하였다. 그런데 乙은 구타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.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과관계 착오설은 甲의 행위에서 인과관계의 착오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.
- ② 계획실현설은 의도한 사실이 결국 실현되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.
- ③ 개괄적 고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를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만, 위 두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.
- ④ 미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의 고의가 각각 다른 이상 양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한다.

문 20.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발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두고 목적에 의한 도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.
- ② 오상과잉방위에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.
- ③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다.
- ④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승낙능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하므로,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.